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 신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8일 ~ 4월 27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수 영 (서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김 희 표 (공인 회계사)
- 검 사 위 원 : 윤 영 춘 (공인 회계사)

결산검사 의견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019년 5 월 2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수 영 (인)
검사위원 김 희 표 (인)
검사위원 윤 영 춘 (인)

목 차

Ⅰ.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의 현황 ····· 4

Ⅱ.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6

2. 일반회계 ····· 7

3. 특별회계 ····· 10

Ⅲ. 기금의 결산 ····· 12

Ⅳ. 개선 및 권고사항 ····· 13

Ⅰ.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 입	376,721	407,164	431,288	461,617	512,691
	세 출	324,970	350,894	365,208	392,170	430,332
	결산상잉여금	51,751	56,270	66,080	69,447	82,359
특별회계	세 입	11,757	20,492	24,036	26,109	30,642
	세 출	4,412	7,055	7,029	6,024	10,468
	결산상잉여금	7,345	13,437	17,007	20,085	20,174
계	세 입	388,478	427,656	455,324	487,726	543,333
	세 출	329,382	357,949	372,237	398,194	440,800
	결산상잉여금	59,096	69,707	83,087	89,532	102,533
기 금	전년말조성액	5,598	7,299	8,829	9,492	10,026
	당년도 증가	1,922	2,486	1,142	1,500	1,134
	당년도 사용	541	956	479	966	449
	당년말조성액	6,979	8,829	9,492	10,026	10,711

2018회계연도의 기금을 제외한 세입은 543,3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60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보조금이 51.5%(전년 50.1%)를 차지합니다.

기금을 제외한 세출은 440,8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60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53,369백만원으로 57.5%(전년 58.5%)를 차지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1.4%와 10.7%로 비슷하며 잉여금의 경우 이월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14.5%(전년 7.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당년도 1,449,180원으로 전년 1,329,062원 대비 120,118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치단체 채무계 (a=b+c+d)	17,255	15,067	13,930	11,002	7,263
- 공 채 b	-	-	-	-	-
- 차입금 c	17,255	15,067	13,930	11,002	7,263
- 채무부담행위 d	-	-	-	-	-
지방공기업 채무(e)	-	-	-	-	-
채무총합계 (f=a+e)	17,255	15,067	13,930	11,002	7,263

광주 서구청의 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당년도말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23,878원으로 전년도말 35,842원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다음 지표들이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및 결과값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총예산 = 1.46%	25%초과	40%초과
	채무상환비 비 율	지방채무상환액/일반재원[1] = 2.40%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지방세징수액 현 황	징수액/최근3년평균징수액 = 103%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금고잔액 현 황	당년말잔고/최근3년평균잔고 = 111.8%	20%미만	10%미만

광주 서구청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지표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채무상환비 비율은 중앙에서 일괄입력하는 항목으로 아직 미집계되어 2017회계연도 수치 입력

Ⅱ.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519,544	543,333	440,800	102,533
일반회계	493,416	512,691	430,332	82,359
특별회계	26,128	30,642	10,468	20,174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	12,154	13,083	16,879	6,458	53,959
일반회계	-	11,416	11,125	16,879	6,314	36,625
특별회계	-	738	1,958	-	144	17,334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43,33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19,544백만원보다 23,789백만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인 440,800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2,533백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2,154백만원, 사고이월비 13,083백만원, 계속비이월 16,879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6,458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959백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7년도	443,925	474,391	461,617	2,708	10,066
2018년도	493,416	526,795	512,691	2,715	11,389
결산확인액	493,416	526,795	512,691	2,715	11,389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12,69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3.9%(전년 104.0%)로서 19,275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 초과수납 2,303백만원(전년 4,145백만원)과 세외수입 초과수납 4,311백만원(전년 6,190백만원), 지방교부세 초과수납 5,506백만원(전년 4,277백만원)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3%(전년 97.3%)로 전년과 동일하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7백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32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 출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12,691	512,691	-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17년도	415,774	443,925	392,169	31,956	4,253	15,547
2018년도	461,460	493,416	430,332	39,420	6,177	17,487
결산확인액	461,460	493,416	430,332	39,420	6,177	17,487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461,460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1,956백만원이 이월되어 이를 합산한 예산현액은 493,41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34건 302백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요액 전용 등이고, 이체는 총 229건 15,091백만원으로서 행정기구 및 조직의 개편에 기인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외 3건으로 39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6백만원을 지출하고 351백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2%(전년 88.3%)에 해당하는 430,332백만원(전년 392,169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9,420백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41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등의 연도내 미완료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액은 11,125백만원(전년 8,185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동시장전기시설 개선사업 및 지자체도시숲조성 사업 등의 연내 완공 불가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17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전년 3.5%)에 해당되는 17,487백만원(전년 15,547백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과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입니다.

-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30,332	430,332	-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6,128	40,296	30,642	-	9,654
①의료급여기금	889	978	978	-	-
②주차장 운 영	25,239	39,318	29,664	-	9,654
결 산 확 인 액	26,128	40,296	30,642	-	9,654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30,642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17.3%(전년 122.7%)로서 4,514백만원(전년 4,829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6%(전년 73.7%)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3%p 상승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율은 전년도 26.3% 대비 24%로 2.3%p 낮아졌습니다.

●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하였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25,452	26,128	10,468	2,696	144	12,820
①의료급여기금	889	889	751	-	138	-
②주차장 운 영	24,563	25,239	9,717	2,696	6	12,820
결 산 확 인 액	25,452	26,128	10,468	2,696	144	12,82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5,452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7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128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사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1%(전년 28.3%)에 해당하는 10,468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738백만원, 사고이월액은 농성동 유탑유블레스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511백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전년 66.3%)에 해당하는 12,820백만원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의 내부유보적립금으로 편성된 11,838백만원(전년 12,205백만원)과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472백만원 미사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 중 367백만원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Ⅲ.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통합관리기금	-	-	16	16	-
사회복지기금	3,898	34	229	195	3,932
양성평등기금	172	36	36	-	208
옥외광고발전기금	925	74	157	83	999
재난관리기금	4,506	534	616	83	5,040
식품진흥기금	525	7	79	72	532
계	10,026	685	1,134	449	10,711

● 결산 개요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통합관리기금 제외)은 1,118백만원이며 사용액 총액은 433백만원입니다. 검사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당년도말 현재액은 10,711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85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449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Ⅳ.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회계>

1.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결손·미수납액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편성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과소 편성되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결손사유관리 및 미수납액 관리

결손사유는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자,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그 사유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서도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미 수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결손처분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개선 권고

각 실무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예산편성 시 과년도 미수납액과 수납액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사유 관리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시의 적절한 결손 처분이 요망 됩니다.

2. 예비비의 계획성 있는 사용요청과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이 종료된 시점인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인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등에 필요한 385백만원에 대해 2018년 1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예비비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에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월액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2) 개선 권고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경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바, 사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사용이 안 되어 이월해야 할 경우 담당자는 이를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과소 편성

(1) 현황 및 문제점

(단위:백만원)

구 분	과년도 미수납액	예 산 현 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2018년도	7,710	864	2,223	-
2017년도	7,689	744	2,261	191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년도 미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은 11.2%이며 수납액은 28.8%로 예산현액이 지나치게 과소 편성되어 있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불납결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도 전액 납세태만으로만 분류되고 있습니다.

(2) 개선 권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년도 미수금 예산편성시 최소 전년도 수납액 또는 직3개년 평균 수납액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사유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매년 그 회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납결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공통>

1. 자금의 효율적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2018회계년도말 기준 서구청의 정기예금 잔액은 77,292백만원(일반회계: 52,000백만원, 특별회계:16,650백만원, 기금:8,642백만원)으로 구 금고와 약정에 의거 만기 기한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정기예금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별도 관리대장 없이 통장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상태입니다.

(2) 개선 권고

자금관리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막론하고 원금, 이자율, 기간, 만기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월단위 또는 주단위의 자금관리 계획을 만들어 예측된 자금계획으로 예금이자 증대는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가 요망 됩니다. 또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가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하고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게 운영되는 바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2.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당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특별회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 고 이 월		비 고
	금 액	금 액	전 년 대 비	
2016년도	18,606	8,313	(+)712	
2017년도	14,953	8,383	(+)70	
2018년도	12,154	13,083	(+)4,7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명시이월로 처리했어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고이월액	사 유
양동시장전기시설 개선	1,785	안전진단 등의 사유로 공사가 연기되어 명시이월 처리가 가능함에도 설계용역 계약을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함
지자체도시숲조성	657	광주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해야 할 일부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함

(2) 개선 권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즉 당해 연도에 지출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건을 이월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것입니다.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사고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취합(통제)부서에서는 사전에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고 실제 취합시에 이월액 분류가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 및 집행잔액 최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집행잔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 기준 3억원, 예비비 제외)

(단위: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총 무 과	인력운영비	15,242	1,451	9.5
주민자치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91	358	20.0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	46,666	4,004	8.6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지원및감량화	2,198	570	25.9
공원녹지과	중앙공원주변공영주차장조성	500	500	100.0
건 설 과	가로등및보안등유지	2,185	634	29.0
건 설 과	광주천내하상횡단보행교설치	500	500	100.0
교 통 과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1,500	472	31.5
교 통 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829	367	20.1

불가피하거나 합당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선 권고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잔액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정교한 예측,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성과지표 변경 지양 및 변경사유 기재

(1) 현황 및 문제점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가 성과보고 단계에서 변경된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부 서	정 책 사 업 목 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교육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사회문제 및 정책에 대해서 (이하생략)	청년공간 (1개소)	청년정책참여단 회의 (4회)
노인장애인 복지과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운영률 (주2회)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실적 (인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환경조성으로 저출산률 극복	영양플러스사업 만족도 (%)	-

성과지표 변경시 아무런 절차 없이 각 담당자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2) 개선 권고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사전에 설정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원칙적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성과지표 변경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또는 전산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무분별한 성과지표 변경을 방지해야 합니다.